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27
----------	-----

2019년 9월 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8월 6일, 전석기 의원 (찬성자 14명)
-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9년 9월 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전석기 의원)

- 가. 제안이유
 -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특정공사, 기술 제안입찰공사 등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에 포함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2019.4.23.)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기타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3조제1항제5호)
 - 대형공사,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에 포함

- 설계심의분과위원 인원 조정(안 제5조제2항)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조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 개정 (2019.4.23., 2017.12.29.)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을 상향조정 (50명 이내→50명 이상 70명 이내)하는 사항을 각각 반영하는 한편, 기타 상위법령 인용조항이 불일치하는 것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조(기능) 제1항제5호	<신 설>	대형공사, 특정공사,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u>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u> 추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3호 개정 (2019.4.23.)
제5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2항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u>50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u>50명 이상 70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개정 (2017.12.29.)

- 안 제3조제1항제5호는,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지방심의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서 정의하는 ‘대형공사¹⁾’ 또는 ‘특정공사²⁾’,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의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³⁾’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⁴⁾’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추가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 최근 공사현장의 공사기간 관련 실태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의 개정¹⁾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품질·안전강화 등 건설 환경 변화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폭염, 미세먼지 등의 기후요인으로 인해 공사 중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당초 계획한 공사 기간이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10년(2008~2017년)간의 기상상태에 따른 서울시 소재 현장 연평균 비작업일수를 살펴보면(〔표 2〕 참조) 기상 상태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나 작업시간 조정은 공사의 종류나 현장

1) 대형공사 :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2) 특정공사 : 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4)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상태에 따라 상이하지만 건설공사의 주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예를 들어,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이 제한⁵⁾되는 최대순간풍속 초당 15미터를 초과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날이 평균 11.5일로 나타나 공기에 영향을 주고 있음.

[표 2] 기상상태에 따른 서울시 소재 현장 연평균 비작업일수(2008~2017년)

기상상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혹서기	33°C이상	0	0	0	0	0.1	0.4	2.4	5.4	0	0	0	8.3	
	35°C이상	0	0	0	0	0	0	0.2	1.9	0	0	0	2.1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11.7	4	0	0	0	0	0	0	0	0	0.2	8.8	24.7
	신적설 5cm 이상	0.9	0.6	0.2	0	0	0	0	0	0	0	0	0.6	2.3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12.6	4.6	0.2	0	0	0	0	0	0	0	0.2	9.4	27
	일최저기온 -12°C 이하	2.5	0.8	0	0	0	0	0	0	0	0	0	1.6	4.9
일강수량	5mm 이상	0.7	1.6	2.6	4.2	3.6	4.6	10.2	8.4	4.1	2.7	2.8	1.4	46.9
	10mm 이상	0.2	1	1	2.1	2.5	3.4	8.3	5.9	3.1	1.8	1.2	0.8	31.3
	20mm 이상	0	0.5	0.3	1.2	1.4	1.9	6.3	3.3	1.8	0.9	0.6	0.3	18.5
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0.2	0.3	1.7	2.2	1.6	0.5	1.2	1.2	0.5	0.4	1.2	0.5	11.5

(출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훈령 제 1140호))

- 서울시와 계약한 건설공사의 경우,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뿐 폭염이나 미세먼지 발생일수 등과 같은 기후조건이 건설공사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침에도 건설사들은 이에 따라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능하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중지)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거나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하는 부당함이 있었음.

-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⁶⁾으로 태풍, 홍수 등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건설공사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침에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누락되는 요소(준비기간, 정리기간 등), 기후변화요인, 주5일근무제 등 건설 환경의 변화를 설계 시부터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이 제정(2019. 1. 1.) 되었음.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재방사, 환경오염사고,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6.25.>

□ 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2019년 1월 1일 제정)

○ 목적

- '공사기간'의 산정과 '공사기간'의 변경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제4호, 제73조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호, 제6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호, 제75조

○ 공사기간 산출 (제5조)

$$\text{공사기간} = \text{준비기간}^* + \text{비작업일수}^{**} + \text{작업일수}^{***} + \text{정리기간}$$

*준비기간 (초기 하도급업체의 선정, 발주청의 인허가, 도면검토, 측량 등) 예시

공종	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30일	강교기설공사	90일
도로개량공사	40일	PC교량 공사	7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하천공사	40일
공동구공사	80일	항만공사	40일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

***작업일수 :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법정근로시간 준수

****정리기간 :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 내 계상

- 이에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설계심의 요청 시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를 병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이 경우 대상 공사 중 설계 심의가 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를 별도로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이 개정안 시행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결과적으로, 본 개정안과 같이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불합리한 공사기간의 산정을 예방하고 시설물 품질향상 및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되어 행정에 대한 신뢰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다음으로 안 제5조제2항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행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수정하려는 것 역시, 영 제17조제5항(개정 2017. 12. 29.)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④ (생략)

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 영에서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 상한 정수를 확대한 것은 설계에 대한 부실심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것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다수의 심의 건수가 중복되더라도 원활한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참고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 나·라·마·사·아·목7)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대안입

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현황

- 위원수 : 50명 (내부위원 50%, 외부위원 50%)
 - 토목, 건축, 설비, 환경 등 6개 부분 16개 전문분야로 구성
- 임 기 : 1년 이내

위원 자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3조)

- ▶ 공무원 : 4급이상 및 기술사·건축사·박사학위 소지 5급이상 기술직렬
- ▶ 공사·공단 :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박사학위 소지 2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
- ▶ 연구원 :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원
- ▶ 교수 :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

○ **기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라목·마목·사목·아목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업체를 선정함.

- 또한, 최근 10년간 서울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으며 2019년 하반기 이후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예상 사업은 4개인 것으로 파악됨. ([표 4] 참조).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표 3]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현황 (2010~2019년)

계	2019. 7월말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13	-	-	-	-	-	-	1	1	3	8

[표 4] 2019년 이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입찰방법	발주기관	심의 예정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토목)	- 복합환승센터 600m - 철도터널 400m	9,375	2019.12.~ 2023.1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도시기반 시설본부	'19.12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축/시스템)	- 복합환승센터 (지하7층)	6,362	2019년 ~ 2024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도시기반 시설본부	'20.5.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설치	- 총연장: L=1,700m (지하차도 L=1,356m)	1,365	2020년 ~ 2024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지역발전본부	'20.2.
강동구자원순환 센터 건립사업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시설 360톤 - 재활용품 선별시설 70톤 - 생활폐기물 압축적환 시설 200톤 - 대형폐기물 적환시설 10톤	1,596	2019년 ~ 2024년	설계·시공 일괄입찰	강동구청 (도시기반시 설본부)	'20.3.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석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27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6일

발 의 자 : 전석기 의원 (1명)

찬 성 자 : 성흠제, 홍성룡, 최웅식,
문장길, 김기대, 김평남,
임종국, 김달호, 김수규,
오한아, 이승미, 이준형,
김화숙, 이석주 의원 (14명)

1. 제안이유

-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등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에 포함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2019.4.23.)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기타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3조제1항제5호)

- 대형공사,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에 포함

나. 설계심의분과위원 인원 조정(안 제5조제2항)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조정

다. 기타 인용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제5호 중 ‘영 제17조제2항제3호’를 ‘영 제17조제2항제4호’로, 제6호 중 ‘영 제17조제2항제4호’를 ‘영 제17조제2항제5호’로 하고, 제7호 중 ‘영 제19조제4항제4호’를 ‘영 제19조제4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17조제2항제3호 가목, 나목에 따른 대형공사, 특정공사, 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중 “50명 이내”를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기능) ① (생략)</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5. <u>영 제17조제2항제3호</u>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p> <p>6. <u>영 제17조제2항제4호</u>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p> <p>7. <u>영 제19조제4항제4호</u>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p> <p>8. (생략)</p> <p>9. (생략)</p> <p>10.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영 제17조제2항제3호</u> 가목, <u>나목에 따른 대형공사, 특정공사,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u></p> <p>6. <u>영 제17조제2항제4호</u>----- ----- ----- -----</p> <p>7. <u>영 제17조제2항제5호</u>----- ----- ----- -----</p> <p>8. <u>영 제19조제4항제5호</u>----- ----- -----</p> <p>9. (현행과 같음)</p> <p>10. (현행과 같음)</p> <p>1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생략)</p> <p>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 (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 명을 포함한 <u>50명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제5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50명 이상 70명 이내</u>----- ----- -----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